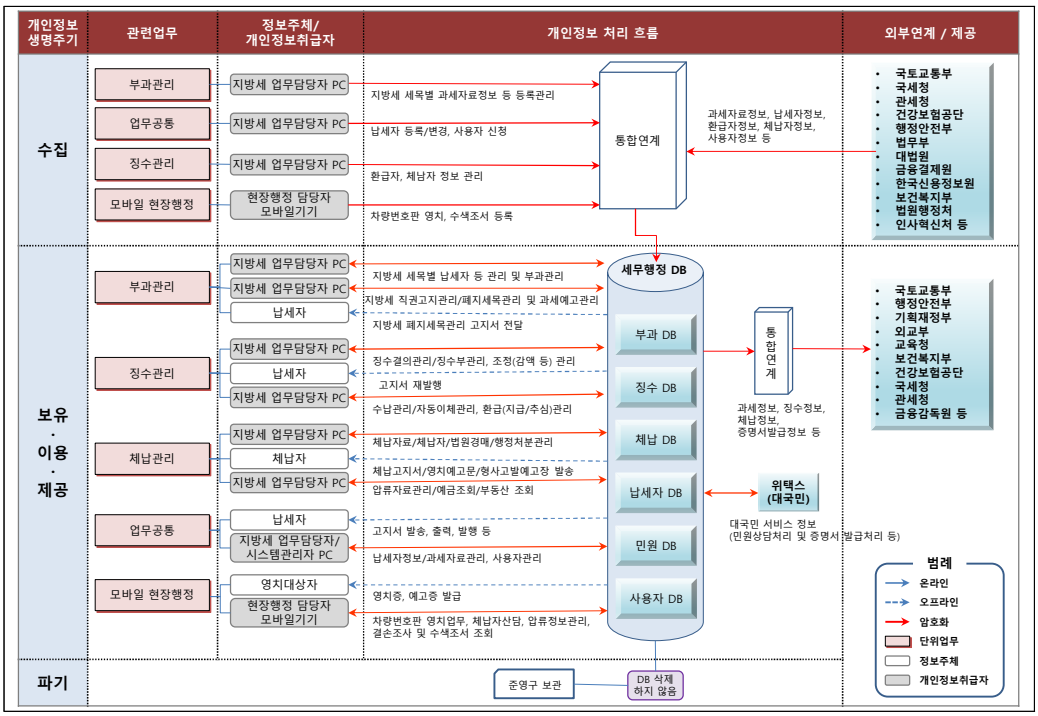
#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공공기관 명</td><td colspan="6">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기관</td><td>대진정보통신(주)</td><td>평가<br>기간</td><td>2026.07.01<br>~<br>2026.07.31</td><td>평가<br>예산</td><td colspan="2">☐ 1천만원 미만<br>☐ 1천만원 이상 ~ 3천만원 미만<br>☐ 3천만원 이상 ~ 5천만원 미만<br>☐ 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<br>☑ 1억원 이상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평가대상시스템 개요</td><td>시스템명</td><td colspan="3">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</td><td colspan="2">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</td><td>2026. 1. ~<br>2026. 12</td></tr>
<tr><td>추진개요 및 목적</td><td colspan="6">•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“신뢰받는 지방세정 실현을 위한 지능형 지방세 정보체계 구현”<br>• 첨단 정보기술 적용, 업무 프로세스 쇄신 등으로 ①맞춤형 납세편의, ②효율적 세입행정 ③지방세입 신뢰도 제고를 혁신적으로 달성<br>• 지방분권, 전국 고른 균형발전,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세무 행정 및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현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추진성격</td><td>대상여부</td><td colspan="2">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5만 명 이상 민감정보·고유식별정보 처리<br>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50만 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연계 처리<br>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3호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처리</td><td rowspan="2">추진예산</td><td rowspan="2">102,650,562천원<br>(VAT 별도)</td></tr>
<tr><td>추진주체</td><td colspan="2">행정안전부</td></tr>
<tr><td>추진근거</td><td colspan="2">지방세기본법 제135조(지방세업무의 정보화)</td><td>추진유형</td><td>☐ 신규 구축<br>☐ 변경(고도화)<br>☑ 운영</td></tr>
<tr><td>신기술 유형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
<tr><td>주요내용</td><td colspan="6">•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부과.징수.체납관리 등 세무 업무처리 지원<br>• 지방세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<br>•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</td></tr>
<tr><td>운용체계 변경내용 (변경인 경우)</td><td colspan="6">해당하지 않음</td></tr>
</table>

| 개인정보파일개요 | 파일명 | 정보주체 수 | 개인정보 항목 | 제3자 제공 | 개인정보 처리 목적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(지방세) 담배소비세관리 | 445건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집주소, 집연락처, 핸드폰, E-Mail | 행정안전부, 관세청 | 담배소비세 부과 관리 |
| | (지방세) 등록면허세 관리 | 154,818건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집주소, 집연락처, 물건지, 면허명, 면허증, 은행명, 계좌번호, 전자납부번호, 허가번호 | - |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관리 |
| | (지방세) 자동차세 관리 | 49,561건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E-Mail, 집주소, 집연락처, 핸드폰, 차량번호, 은행명, 계좌번호, 전자납부번호, 장애정보 | - | 자동차세 과세자료 관리 |
| | (지방세) 재산세관리 | 134,285건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집주소, 전자납부번호, 물건지 | 국토교통부, 보건복지부, 주택도시보증공사, 관세청, 국민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, 국세청, 근로복지공단, 기획재정부, 병무청, 통계청, 한국부동산원, 기술보증기금, 행정안전부 |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 |
| | (지방세) 주민세관리 | 69,014건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집주소, 핸드폰 | 대한적십자사 | 주민세 과세자료 관리 |
| | (지방세) 지방소득세 관리 | 22,744건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집주소, 집연락처, 핸드폰, 전자납부번호, 은행명, 계좌번호 | 국세청 |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관리 |
| | (지방세) 지역자원시설세관리 | 25건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집주소, 집연락처, 물건지 | - |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자료 관리 |
| | (지방세) 취득세관리 | 121,303건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집주소, 핸드폰, 전자납부번호 | | 취득세 부과 관리 |
| | (지방세) 수납관리 | 190,596건 |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집주소, 집연락처, 직장연 | 금융결제원 | 지방세 수납 관리 |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락처, 직장주소, 핸드폰, 은행명, 계좌번호, 신용카드번호, 과세정보 | | |
| | (지방세) 감액관리 | 31,127건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집주소, 집연락처, 핸드폰, 사업자명, 은행명, 계좌번호, 과세정보 | - | 지방세 감액 및 수정 관리 |
| | (지방세) 환급관리 | 37,515건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집주소, 환급금액, 은행명, 계좌번호 | 관세청, 시금고은행, 국세청 | 지방세 환급 관리 |
| | (지방세) 체납관리 | 10,325건 |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집주소, 집연락처, 핸드폰, 직업, 직장명, 예금주명, 계좌번호, 체납금액, 과세정보 | 행정안전부, 보험개발원, 법무부, 국토교통부, 금융정보분석원, 기획재정부, 관세청, 국세청 | 지방세 체납 관리 |
| | (지방세) 압류관리 | 19,255건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직장명, 직장주소, 예금주명, 은행명, 계좌번호, 가상계좌번호, 증권보유좌수, 보유액, 압류내역, 차량번호, 체납금액, 체납자지분, 소유지분율, 임차금액, 압류금액, 추심금액, 예금금액, 보험금액 | 대법원, 건강보험공단, 국세청, 국토교통부, 관세청, 금융결제원, 여신금융협회 | 지방세 압류 관리 |
| | (지방세) 정리보류 관리 | 16,131건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집주소, 핸드폰, 자산정보, 납세정보, 행정처분정보, 신용정보 | 한국자산관리공사, 한국신용정보원, 법무부 | 지방세 정리보류 관리 |
| | (지방세) 납세자관리 | 9,619건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생년월일, 집주소, 핸드폰, 과세정보 | - | 지방세 납세자정보 관리 |
| | (지방세) 행정제재 관리 | 2,030건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, 체납정보 | - | 행정제재 관리 |
| | (지방세) 세무조사 관리 | 33건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, 과세정보, 재산정보 | - | 세무조사 대상 관리 (법인 정보만 존재) |

<table>
<tr><td>개인정보 처리<br>흐름분석</td><td colspan="2">1. 개인정보 처리 흐름<br>- 표준지방세시스템은 국토교통부, 국세청, 관세청, 국민건강보험공단, 행정안전부 등과 통합연계시스템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, 납세자정보, 환급자정보, 체납자정보,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.<br>-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지방세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/징수/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B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<br>- 지방세 관련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모두 준영구이므로 DB에서 삭제하지 않음<br><br>2.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<br>
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영<br>향<br>평<br>가<br>기<br>준</td><td>평가기준<br>변경사항<br>및 사유</td><td>-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“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(제2025-7호, 2025.9.5.,일부개정) 제10조(평가영역 및 평가분야), 제11조(평가항목)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<br><br>-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,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(‘22.3)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. 단, 행정안전부 "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"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지표” 에서 제시한 “자치단체 점검내용”을 포함하여 평가함.<br>. 대상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(3장)의 8개 항목 제외<br>.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(4장)의 15개 항목 제외<br>-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(5장)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(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)</td></tr>
<tr><td>주요<br>평가기준</td><td>-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“개인정보 보호법령”을 반영<br>-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”을 반영<br>-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(2025년 10월 개정) 준용<br>-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·평가</td><td><u>1.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</u><br>-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『지방세법』제49조, 제130조,『지방세기본법』제135조,『지방세기본법』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,『개인정보보호법』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<br><u>2. 개인정보 처리,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</u><br>-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기준 및 보유 목적에 부합된 기간(준영구)으로 산정하여 보유하고 있음<br>-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음<br>-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준영구로 산정되어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는 하고 있지 않음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</td><td>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</td><td>- 위탁 계약(3.4.2) :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무 위탁시 위탁계약서 작성<br>- 수탁사 관리·감독(3.4.4) : 정기적으로 수탁사를 관리 및 감독<br>- 보안 업데이트 적용(4.5.2) : EOS 제품의 OS를 보안 업데이트가 가능한 운영체제로 변경<br>- 내부 규정 현행화 : 내부관리계획, 침해사고, 재해재난 지치을 최신 법령을 적용하여 검토하여 현행화</td></tr>
<tr><td>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</td><td>해당없음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결과</td><td>•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1장)는 개인정보보호 조직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계획, 개인정보 침해대응 평가분야는 미흡한 점이 발견됨.<br>•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2장)는 개인정보파일 관리,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분야는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평가분야는 미흡한 점이 발견됨.<br>•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(3장)는 개인정보 수집, 보유, 이용·제공, 파기 등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평가분야는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위탁 평가분야는 미흡한 점이 발견됨.<br>•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(4장)는 접근통제, 개인정보의 암호화,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,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, 물리적 접근방지, 개인정보의 파기,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분야에 대한 평가분야는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접근권한 관리,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 등 평가분야는 미흡한 점이 발견됨.<br>• 요즘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·노출 사고가 빈번함으로 시스템 비인가 접근, 접근권한, 접속로그 점검 활동 등을 강화하여야 하며, 업무수행 시 개인정보 유·노출 사고에 유의할 것을 권고함.</td></tr>
</table>